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화재의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서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토록 하고 있고, 소방공무원 경력자는 공직경력만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자동 부여하여 자격증을 발급하는 것은 공직자만을 위한 과도한 특례로 국민 모두에게 공정기회를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에 대한 특례를 폐지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화재안전조사 방법 및 절차, 연기사유를 명확히하고 화재안전조사위원회를 합리적으로 구성·운영 토록함(안 제7조·제8조·제9조·제11조)
- 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누리집으로 단어를 순화함(안 제8조의2항·제15조 제2항·제17조제1항)
- 다. 소방계획서 작성시 공사장 관계자 화재예방·대피교육, 용접·용단 등 화기취급 행위 감독 강화, 소방계획서 작성 시점을 정함(안 제27조)

라. 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사유를 추가하여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함(안 제47조)

마.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 기준 중 살수설비의 범위를 옥내·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등, 물분무소화설비 등을 포함함(안 별표 3)

바. 소방공무원 근무경력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 특례를 폐지하고 자격시험 응시자격만 부여함(안 별표 4, 안 별표 6)

- 1급,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가스관련 시설을 명확히 함
- 2가지 이상 경력자 경력산정 방법을 정함

사.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자격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관계인이 증빙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함(안 별표 5)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04. 17. ~ 05. 27.)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제1항”을 “법 제7조제2항”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법 제8조제2항”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누리집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단서의 각 호”로 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영치(領置)되어”를 “보관되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증축·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의 공사”를 “공사(증축, 용도변경, 대수선 등), 휴·폐업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미리”를 “전화, 전자메일 등으로 미리”로 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중 “과장급 직위”를 “소방경”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3조제2항에 따른 소방공무원”을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인터넷 홈페이지”를 “누리집이”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

제17조제1항 중 “인터넷 홈페이지”를 “누리집”으로 한다.

제25조제3항 전단 중 “건축물대장”을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으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을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및 시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5호 중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을 “소방관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특정소방대상물의 증·개축, 실내건축, 건축, 기계, 전기, 정보통신설비 등의 공사 및 작업과 관련된 화재 예방 및 대피 교육, 용접 및 용단 등 화기 취급 작업에 대한 승인과 관리·감독, 불꽃 발생 및 불티 작업에 대한 화재 안전조치 의무, 그리고 해당 작업에 따른 안전시설 설치 등 화재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②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계획을 반영하여 소방계획서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계획서를 작성·정비하여야 한다.

1. 최초 작성: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신규로 선임된 날

2. 수정 작성: 소방계획서를 작성한 후,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된 날

가.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나. 소방시설, 방화구획, 방화시설 등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다. 피난경로 및 피난계획 등에 관한 사항

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화재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소방계획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③ 소방안전관리자는 제2항에 따라 소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관계인과 협의하여야 하며, 작성이 완료된 후에는 그 결과를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제4항(중전의 제2항) 중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을 “소방관서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소방관서장은 지도·감독에 필요한 보고, 자료 제출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제1호 중 “것”을 “것(터널, 지하구의 연면적 계산은 그 길이의 평균 폭을 곱하여 계산된 값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34조제2항제2호 중 “화재”를 “관리권원별로 화재”로 한다.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설을”을 “특정소방대상물을”로 한다.

제47조제1항제5호 중 “그 밖에 관계인”을 “관계인”으로, “발생하여 조치 명령등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을 “발생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그 밖에 소방관서장이 조치명령 등을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6호의 사무로 한정한다)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로 한다.

별표 3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제1호 나목의 ‘살수설비’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의 옥내·외 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미분무소화설비, 연결살수설비와 방수총 등 수원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살수할 수 있는 설비를 말한다.

별표 4 제1호나목2) 중 “같다)”를 “같다) 또는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하고, 같은 목 3) 중 “실무경력”을 “실무경력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하며, 같은 목 4)를 삭제하고, 같은 목 5)를 4)로 하며, 같은 표 제2호가목4) 중 “시설”을 “시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7호나목 2), 3)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2)을 삭제하며, 같은 목 3)을 2)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2) 중 “저장·취급하는 시설”을 “저장·취급하는 시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7호나목 1), 2), 3)을 말한다)”로 하며, 같은 호 나목2)을 삭제하고, 같은 목 3) 및 4)를 각각 2) 및 3)으로 하며, 같은 표 제4호나목1)을 삭제하고, 같은 목 2) 및 3)을 각각 1) 및 2)로 한다.

별표 5 제1호나목 중 “연면적”을 “단일 건물 또는 여러개의 건물로 이루어진 특정소방대상물 중 연면적”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을 “건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목에 1)부터 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3호나목 단서 중 “1만5천제곱미터(특정소방대상물)을 “15,000제곱미터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하되, 특정소방대상물”로, “무인방수차”를 “무인방수차 중 어느 하나”로, “3만제곱미터로 한다)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해야”를 “초과 연면적 기준을 30,000제곱미터로 하고, 관계인은 이를 관할 소방서장에게 근로계약서 등 서류로 증빙하여야”로 한다.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또는 「자격기본법」

에 따른 국가자격이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소방기술사·소방시설관리사·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 2) 건축사·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일반기계기사·전기기능장·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건설안전기사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 1)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2) 「위험물 안전관리법」 등 법령에 따라서 설치한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

3) 군부대(주한 외국군부대를 포함한다) 및 의무소방대의 소방대원

4)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총괄재난관리자

5)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경력이 있는 사람

바.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별표 5 제3호다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관계인이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야간(「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야간근로” 시간을 말한다)이나 휴일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근로계약서 등 서류로 증빙할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숙박시설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는 경우도 서류로 증빙하여야 한다.)

별표 5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1. 터널, 지하구의 연면적 계산은 그 길이와 평균 폭을 곱하여 계산된 값을 말한다.

별표 6 제2호자목을 차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3호아목 및 하목을 각각 하목 및 거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하목(종전의 아목) 중 “경찰공무원으로 3년”을 “소방공무원으로 1년”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라목 중 “경찰공무원으로”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로, “근무한”을 “생활안전 업무에 근무한”으로 하며, 같은 호 아목을 자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생활안전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아. 소방공무원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 있는 사람

별표 6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위 표에서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을 산정할 때에는 동일한 기간에 수행한 경력이 두 가지 이상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하나의 자격기준에 대해서만 그 기간을 인정하고, 경력기간이 중복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간을 실무경력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인정받은 각각의 실무경력 기간을 자격기준별 실무경력 기간으로 나누어 합한 값이 1 이상이면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

다.

별표 8 제2호가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 이상

가) 전기안전기술사

나) 화공안전기술사

다) 가스기술사

라) 위험물기능장

마) 건축사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 영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본다.

제3조(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선임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해임되는 날까지는 별표 5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5조(소방계획서의 작성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27조제2항에 따른 소방계획서 작성 중 최초작성은 이 영 시행 이후 소방계획서를 처음 작성하는 대상부터 적용하고, 수정작성은 2026년 8월 1일 이후 변경사항이 있는 대상에 적용한다.

제6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응시자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접수한 사람은 별표 6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협회”를 각각 “안전원”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협회는”을 “안전원은”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화재안전조사의 항목)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한다)은 <u>법 제7조제1항</u>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	제7조(화재안전조사의 항목) --- ----- ----- --- <u>법 제7조제2항</u> ----- ----- -----.
1. ~ 15. (생략)	1. ~ 15. (현행과 같음)
제8조(화재안전조사의 방법·절차 등) ① (생략)	제8조(화재안전조사의 방법·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사전에 <u>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u> 본문에 따라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 조사계획을 소방청,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이하 “소방관서”라 한다)의 <u>인터넷 홈페이지</u> 나 <u>법 제16조제3항</u> 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통해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② ----- <u>법 제8조제2항</u> ----- ----- ----- ----- <u>누리집</u> ----- ----- -----.
③ 소방관서장은 <u>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u> 에 따라 사전 통지 없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계인에게	③ ----- <u>단서의 각 호</u> ----- ----- ----- -----

조사사유 및 조사범위 등을 현장에서 설명해야 한다.

④ ~ ⑥ (생략)

제9조(화재안전조사의 연기) ①
법 제8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2. (생략)

3. 권한 있는 기관에 자체점검 기록부, 교육·훈련일지 등 화재안전조사에 필요한 장부·서류 등이 압수되거나 영치(領置)되어 있는 경우

4. 소방대상물의 증축·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의 공사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② (생략)

③ 소방관서장은 법 제8조제4항 후단에 따라 화재안전조사의 연기를 승인한 경우라도 연기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기사유가 없어졌거나 긴급히 조사를 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관계인에게 미리 알리고 화재안전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9조(화재안전조사의 연기) ① -

-----.

1. 2. (현행과 같음)

3. -----

----- 보관
되어 -----

4. ----- 공사(증축, 용도변경, 대수선 등), 휴#8231;폐업 등-----

② (현행과 같음)

③ -----

----- 전화, 전자메일 등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1조(화재안전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② (생략)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관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2. ~ 5. (생략)

6.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조제2항에 따른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한 교육 또는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④ ~ ⑥ (생략)

제15조(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① (생략)

② 소방관서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화재안전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 30일 이상 해당 소방관서 인터넷 홈페이지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전산시스템

미리 -----.

제11조(화재안전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소방경 -----
--

2. ~ 5. (현행과 같음)

6. -----
-- 제2조제2호에 따른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5조(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① (현행과 같음)

② -----

----- 누리집 -----

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③ ~ ⑥ (생략)

제16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
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
소를 말한다.

1. 제조소등

2. ~ 5. (생략)

② (생략)

제17조(옴진 물건 등의 보관기간
및 보관기간 경과 후 처리) ①
소방관서장은 법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옴진 물건 등(이하 “옴진물건
등”이라 한다)을 보관하는 경우
에는 그날부터 14일 동안 해당
소방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② ~ ⑥ (생략)

제25조(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
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
정소방대상물) ①·② (생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6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① -

-----.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

2.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옴진 물건 등의 보관기간
및 보관기간 경과 후 처리) ①

----- 누리집 -----
-----.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5조(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
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
정소방대상물)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건축

대상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인
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제1항
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
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둘
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원
(權原)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
대상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특
정소방대상물이 별표 4에 따른
등급 중 둘 이상에 해당하면 그
중에서 등급이 높은 특정소방대
상물로 본다.

제27조(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① 법 제24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9. (생략)

10. 화기 취급 작업에 대한 사전 안전조치 및 감독 등 공사 중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제27조(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및 시행 등) ①

1. ~ 9. (현행과 같음)

10. 특정소방대상물의 증·개축, 실내건축, 건축, 기계, 전기, 정보통신 설비 등의 공사 및 작업과 관련된 화재 예방 및 대피 교육, 용접 및 용단 등 화기 취급 작업에 대한 승인과 관리·감독, 불꽃 발생 및 불티

11. ~ 14. (생략)

15. 그 밖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신설>

작업에 대한 화재 안전조치 의무, 그리고 해당 작업에 따른 안전시설 설치 등 화재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11. ~ 14. (현행과 같음)

15. ----- 소방관서장-----

②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계획을 반영하여 소방계획서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계획서를 작성·정비하여야 한다.

1. 최초 작성: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신규로 선임된 날
2. 수정 작성: 소방계획서를 작성한 후,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

<신 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그 실시에 관하여 지도·감독한다. <후단 신설>

는 중요사항이 변경된 날
가.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
체계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나. 소방시설, 방화구획, 방화
시설 등의 설치·관리에 관
한 사항
다. 피난경로 및 피난계획 등
에 관한 사항
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화
재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소방계획서의 내
용이 변경된 경우

③ 소방안전관리자는 제2항에
따라 소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
경할 때에는 사전에 관계인과
협의하여야 하며, 작성이 완료
된 후에는 그 결과를 관계인에
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소방관서장-----

. 이 경우, 소
방관서장은 지도·감독에 필요한
보고, 자료 제출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1.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생략)

제34조(관리의 권원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조정 기준)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1. (생략)

2. 화재 수신기 또는 소화펌프(가압송수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별도로

제29조(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

1. -----

----- 것
(터널, 지하구의 연면적 계산은 그 길이의 평균 폭을 곱하여 계산된 값을 말한다.)

2. (현행과 같음)

제34조(관리의 권원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조정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관리권원별로 화재 -----

설치되어 있는 경우: 설치된 화재 수신기 또는 소화펌프가 화재를 감지·소화 또는 경보할 수 있는 부분을 각각 하나의 관리 권원으로 보아 각각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3. (생략)

③ (생략)

제43조(화재예방안전진단의 대상)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 8. (생략)

제47조(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① 법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 4. (생략)

5. 그 밖에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여 조치명령등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할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43조(화재예방안전진단의 대상)

----- 특정
소방대상물을 -----
-----.

1. ~ 8. (현행과 같음)

제47조(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① -----

-----.

1. ~ 4. (현행과 같음)

5. 관계인-----

----- 발생한 -----

<u>수 없는 경우</u> <u><신 설></u> ②・③ (생 략) 제4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 방관서장(제48조 및 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소방관서장의 권 한 또는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 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 ·도지사(해당 권한 또는 업무 가 위임되거나 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받거 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 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 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 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 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16. (생 략)	----- 6. 그 밖에 소방관서장이 조치 명령 등을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 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③ (현행과 같음) 제4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 ----- ----- ----- ----- ----- ----- 「개인정 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 강에 관한 정보(제6호의 사무로 한정한다)나 같은 법 시행령 제 19조제1호 -----. 1. ~ 16. (현행과 같음)
--	--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제19조제2항 관련)

1.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 기준

특수가연물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쌓아 저장해야 한다. 다만, 석탄·목탄류를 발전용(發電用)으로 저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품명별로 구분하여 쌓을 것

나. 다음의 기준에 맞게 쌓을 것

구분	살수설비를 설치하거나 방사능력 범위에 해당 특수가연물이 포함되도록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는 경우	그 밖의 경우
높이	15미터 이하	10미터 이하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석탄·목탄류의 경우에는 300제곱미터) 이하	50제곱미터(석탄·목탄류의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이하

다. 실외에 쌓아 저장하는 경우 쌓는 부분이 대지경계선, 도로 및 인접 건축물과 최소 6미터 이상 간격을 둘 것. 다만, 쌓는 높이보다 0.9미터 이상 높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내화구조(이하 “내화구조”라 한다) 벽체를 설치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

라. 실내에 쌓아 저장하는 경우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이면서 불연재료여야 하고, 다른 종류의 특수가연물과 같은 공간에 보관하지 않을 것. 다만, 내화구조의 벽으로 분리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마. 쌓는 부분 바닥면적의 사이는 실내의 경우 1.2미터 또는 쌓는 높이의 1/2 중 큰 값 이상으로 간격을 두어야 하며, 실외의 경우 3미터 또는 쌓는 높이 중 큰 값 이상으로 간격을 둘 것

2. 특수가연물 표시

가.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품명, 최대저장수량, 단위부피당 질량 또는 단위체적당 질량, 관리책임자 성명·직책, 연락처 및 화기취급의 금

지표시가 포함된 특수가연물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나. 특수가연물 표지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특수가연물	
화기엄금	
품 명	합성수지류
최대저장수량 (배수)	000톤(00배)
단위부피당 질량 (단위체적당 질량)	000kg/m ³
관리책임자 (직책)	홍길동 팀장
연락처	02-000-0000

- 1) 특수가연물 표지는 한 변의 길이가 0.3미터 이상, 다른 한 변의 길이가 0.6미터 이상인 직사각형으로 할 것
 - 2) 특수가연물 표지의 바탕은 흰색으로, 문자는 검은색으로 할 것. 다만, “화기엄금” 표시 부분은 제외한다.
 - 3) 특수가연물 표지 중 화기엄금 표시 부분의 바탕은 붉은색으로, 문자는 백색으로 할 것
- 다. 특수가연물 표지는 특수가연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장소 중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해야 한다.

비고

제1호 나목의 '살수설비'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의 옥내·외 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미분무소화설비, 연결살수설비와 방수총 등 수원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살수할 수 있는 설비를 말한다.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4. 5. 7.>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제25조제1항 관련)

1.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 2)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 3)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 받은 사람

- 1)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2)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또는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3)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이 있는 사람
- 4)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 선임인원: 1명 이상

2.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

- 1)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 2)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한다)
- 3)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 4)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7호나목 2), 3)을 말한다)

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 1)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2)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 선임인원: 1명 이상

3.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제2호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

-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다목에 따라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같은 호 라목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같은 호 바목에 따라 물분무등소화설비[화재안전기준에 따라 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7호나목 1), 2), 3)을 말한다)

3) 지하구

4)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나.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제2호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다. 선임인원: 1명 이상

4.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제2호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제3호에 따른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에 따라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한다)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2호다목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나.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 1)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 2)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다. 선임인원: 1명 이상

비고

1.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제조소등과 지하구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제외한다.
2. 이 표 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산정할 때에는 동일한 기간에 수행한 경력이 두 가지 이상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하나의 자격기준에 대해서만 그 기간을 인정하고, 경력기간이 중복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경력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인정받은 각각의 경력기간을 자격기준별 경력기간으로 나누어 합한 값이 1 이상이면 선임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3. 1급 및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가연성 가스 저장·취급에 따른 용량 계산은 가스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된 저장 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압축가스의 저장탱크 및 용기의 저장능력 산정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다.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제25조제2항 관련)

1.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별표 4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중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

나. 단일 건물 또는 여러개의 건물로 이루어진 특정소방대상물 중 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공동주택 중 기숙사

2) 의료시설

3) 노유자 시설

4) 수련시설

5) 숙박시설(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2.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자격

가. 별표 4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또는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이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방기술사·소방시설관리사·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2) 건축사·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일반기계기사·전기기능장·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건설안전기사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라.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강습교육 중 이 영 제3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위험물 안전관리법」 등 법령에 따라서 설치한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

3) 군부대(주한 외국군부대를 포함한다) 및 의무소방대의 소방대원

4)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총괄재난관리자

5)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경력이 있는 사람

바.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3. 선임인원

가. 제1호가목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는 1명. 다만,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해야 한다.

나. 제1호나목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는 1명. 다만, 초과되는 연면적 15,000제곱미터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방재실에 자위소방대가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소방자동차 중 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또는 무인방수차 중 어느 하나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초과 연면적 기준을 30,000제곱미터로 하고, 관계인은 이를 관할 소방서장에게 근로계약서 등 서류로 증빙하여야 한다

다. 제1호다목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는 1명. 다만, 관계인이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야간(「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야간근로” 시간을 말한다)이나 휴일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근로계약서 등 서류로 증빙할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숙박시설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는 경우도 서류로 증빙하여야 한다.)

비고

1. 터널, 지하구의 연면적 계산은 그 길이와 평균 폭을 곱하여 계산된 값을 말한다.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제31조 관련)

1.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가.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소방설비기사의 경우에는 자격 취득 후 2년, 소방설비산업기사의 경우에는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있는 사람

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후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 및 제91조에 따른 고등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학과를 졸업한 후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후 3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1)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2) 법령에 따라 1)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 3)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소방행정학(소방학 및 소방방재학을 포함한다)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및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1

- 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사.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10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아.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강습교육 중 이 영 제3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 자.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되어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1급 소방안전관리자

- 가.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학과를 졸업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후 3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1)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2) 법령에 따라 1)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 3)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 다. 소방행정학(소방학 및 소방방재학을 포함한다)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및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
- 라. 5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마.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강습교육 중 이 영 제3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 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후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사.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후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합산한다)이 있는 사람

아.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자.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차. 제1호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3. 2급 소방안전관리자

가.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법령에 따라 1)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1년 이상 화재진압 또는 그 보조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되어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군부대(주한 외국군부대를 포함한다) 및 의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서 2년 이상 안전검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생활안전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자.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강습교육 중 이 영 제3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차.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카.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타.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파. 건축사·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일반기계기사·전기기능장·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건설안전기사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하.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4. 3급 소방안전관리자

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되어 의용소방대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년 이상 안전검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생활안전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강습교육 중 이 영 제3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강습 교육을 수료한 사람

사.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아. 소방공무원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 있는 사람

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비고

위 표에서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을 산정할 때에는 동일한 기간에 수행한 경력이 두 가지 이상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하나의 자격기준에 대해서만 그 기간을 인정하고, 경력기간이 중복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간을 실무경력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인정받은 각각의 실무경력기간을 자격기준별 실무경력 기간으로 나누어 합한 값이 1 이상이면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의 시설, 전문인력 등 지정기준(제46조 관련)

1. 시설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단체로서 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실과 제3호에 따른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는 것. 이 경우 사무실과 창고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사무실과 창고를 갖춘 것으로 본다.

2. 전문인력

다음 각 목의 전문인력을 모두 갖추는 것. 이 경우 전문인력은 해당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의 상근 직원이어야 하며, 한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자격 요건 중 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한 명의 전문인력으로 본다.

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 1) 소방기술사: 1명 이상
- 2) 소방시설관리사: 1명 이상
- 3)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 이상

가) 전기안전기술사

나) 화공안전기술사

다) 가스기술사

라) 위험물기능장

마) 건축사

나. 다음의 분야별로 각 1명 이상

분야	자격 요건
소방	1) 소방기술사 2) 소방시설관리사 3) 소방설비기사(산업기사를 포함한다) 자격 취득 후 소방 관련 업무 경력이 3년(소방설비산업기사의 경우 5년) 이상인 사람
전기	1) 전기안전기술사 2) 전기기사(산업기사를 포함한다) 자격 취득 후 소방 관련 업무 경력이 3년(전기산업기사의 경우 5년) 이상인 사람
화공	1) 화공안전기술사

	2) 화공기사(산업기사를 포함한다) 자격 취득 후 소방 관련 업무 경력이 3년(화공산업기사의 경우 5년) 이상인 사람
가스	1) 가스기술사 2) 가스기사(산업기사를 포함한다) 자격 취득 후 소방 관련 업무 경력이 3년(가스산업기사의 경우 5년) 이상인 사람
위험물	1) 위험물기능장 2) 위험물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소방 관련 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건축	1) 건축사 2) 건축기사(산업기사를 포함한다) 자격 취득 후 소방 관련 업무 경력이 3년(건축산업기사의 경우 5년) 이상인 사람
교육훈련	소방안전교육사

※ 비고

소방 관련 업무 경력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3. 장비

소방, 전기, 가스, 위험물, 건축 분야별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갖추 것

< 의안 소관 부서명 >

소방청 예방안전과	
연 락 처	(044) 205 - 7451